파주시 공고 제2026-2987호

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(「청소년 기본법」)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‘청소년육성위원회’의 명칭을 ‘청소년정책위원회’로 변경하여 제도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○ 청소년육성위원회(청소년정책위원회) 구성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범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○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1조, 안 제2장, 안 제3조)

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전부 정비 (안 제4조)

○ 조문 정비 (안 제11조)

4. 자치법규안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: 2026년 12월 10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FAX 등

다. 기재내용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: 파주시장(청년청소년과)

○ 주소: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(우 10932)

○ 전화: 031-940-5229 / FAX 031-940-8659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**자치법규명: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**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　　소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:

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　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 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